

장기요양급여이용 계약에 관한 안내

육연노인복지센터

(센터 운영규정에 일부 내용 고지)

2024.01.01.적용

제8조(이용 계약에 관한 사항)

이용 계약에 관한 세부사항은 다음과 같다.

- 가. **계약기간** - 계약기간 및 서비스 이용기간은 장기요양인정서(이하 ‘인정서’)의 유효기간으로 하며, 유효기간 만료 시에는 재계약을 하여야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.
- 나. **계약목적** - 계약의 목적은 서비스제공자(기관)와 서비스대상자(보호자)의 권리와 의무를 알고 이를 성실히 이행하기 위함에 있다.
- 다. **본인부담금** -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의거하여 재가급여는 당월 장기요양급여비용의 100분의 15로 한다.
- (1)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기초생활수급자는 전액 면제한다.
- (2) 의료급여 수급자 등 보건복지부 장관이 정하는 경감 대상자는 건강보험 요율에 따라 40% 및 60%를 경감한다.
- 라. 재가급여 **월 한도액**은 아래 표와 같으며, 재가급여 월 한도액의 적용 기간은 매월 1일부터 말일까지로 한다.
- (단, 노인장기요양보험법령 등의 개정에 따라 매해 변경될 수 있다.)
- 마. **그 밖의 이용부담액**은 실제 비용으로 하며, 월 한도액을 초과하는 금액에 대해서는 전액 대상자(보호자)가 부담하는 것으로 한다.

구 분		금액(원)
재가급여 월 한도액	1등급	2,069,900원
	2등급	1,869,600원
	3등급	1,455,800원
	4등급	1,341,800원
	5등급	1,151,600원
	인지지원등급	643,700원

구 분		(방문당) 금액(원)
방문요양	30분 이상	16,630
	60분 이상	24,120
	90분 이상	32,510
	120분 이상	41,380
	150분 이상	48,250
	180분 이상	54,320
	210분 이상	60,530
	240분 이상	66,770

구 분		(방문당) 금액(원)
방문목욕	방문목욕 차량을 이용한 경우 (차량 내 목욕)	84,670
	방문목욕 차량을 이용한 경우 (가정 내 목욕)	76,340
	방문목욕 차량을 이용하지 아니한 경우	47,670

바. 신원인수인의 권리, 의무, 계약의 해제 등에 관한 사항

(1) 권리

- 가) 이용자의 건강상태에 관한 정보를 제공받을 권리
- 나) 이용자와 함께 서비스 급여계획을 결정 내릴 권리
- 다) 이용자의 사정에 따라 자유로이 이용할 수 있는 권리
- 라) 이용자에 관한 개인정보를 제공받을 권리
- 마) 그 밖의 이용에 관한 제반 사항을 포함하여 편의를 제공받을 권리

(2) 의무

- 가) 이용자에 건강 및 필요한 자료제공과 교육의 의무
- 나) 이용자의 월 이용료 등 본인부담의무
- 다) 개인정보 변경시 즉시 통보 의무
- 라) 장기출장 등으로 보호자 의무 이행이 어려울시 대리인 선정 의무
- 마) 그 밖의 이용에 관한 제반사항을 포함한 인수인의 이용 준수 의무

(3) 계약의 해제 - 다음 각 호의 요건에 해당될 경우에는 대상자 또는 보호자에게 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며, 해제 시에는 건강보험공단의 자료제출 요구를 제외하고는 이용자의 신원을 공개하지 않는다.

- 가) 대상자의 생명이 위험하거나 사망하였을 때
- 나) 대상자의 건강진단 결과 법정 전염병 소지자 또는 보균자로 판정될 때
- 다) 6회 이상 본인부담금을 납부하지 아니하고 연체하였을 때
- 라) 회회성 또는 폭력성 등 심한 치매나 성격상 문제로 인해 재가서비스를 제공하기 어렵다고 판단되었을 때
- 마) 수급자의 건강과 관련한 중요한 정보를 고의적으로 숨긴 것이 드러났을 때

사. 이용료 등 수납 -기관이용에 따른 이용료는 매년 관계법 및 지침에 따라 변동될 수 있다. 월 이용료는 계좌입금 또는 현금 수납 한다.

아. 이용료 등비용에 대한 반환 - 대상자와 계약 해지 시 이용료 잔액에 대하여 현금 또는 계좌 입금으로 반환 한다.

제9조(이용료 등 비용에 대한 변경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사항)

노인장기요양보험 요양급여 등급이 변경되었을 때, 요양 급여수가 기준이 변경되었을 때, 이용계약서의 계약기간이 만료되어 재계약을 하여야하는 때 및 기타 사유 등으로 인해

이용료 등의 변경이 필요시에는 그 비용을 변경할 수 있으며, 변경 방법 및 절차는 계약서에 변경된 사항을 기록하고, 수급자(보호자)와 기관이 변경사항을 확인한 후 서명 날인하여 각각 1부씩 보관하는 것으로 한다.

제10조(서비스의 내용과 그 비용의 부담에 관한 사항)

가. 서비스의 내용

- 1) 방문요양 : 장기요양요원이 수급자의 가정 등을 방문하여 신체활동 및 가사활동 등을 지원하는 장기요양급여
- 2) 방문목욕 : 장기요양요원이 목욕설비를 갖춘 장비 또는 가정 내 장비를 이용하여 수급자의 가정 등을 방문하여 목욕을 제공하는 장기요양급여

나. 서비스의 세부사항

- (1) 신체활동 지원
 - 세면도움, 구강관리, 머리감기기, 몸단장, 옷 갈아입히기, 목욕도움, 화장실 이용하기, 기저귀 교환, 식사 도움, 체위변경, 이동도움, 신체기능의 유지 증진, 운동 및 일상생활 훈련 보조 등
- (2) 일상생활(가사)지원서비스
 - 취사, 청소 및 주변정돈, 세탁, 장보기 등
- (3) 개인 활동 지원
 - 외출동행, 병원안내 및 동행, 산책동행, 각종 정보안내, 기타 일상 업무지원 등
- (4) 정서지원
 - 말벗, 격려 및 위로, 생활상담, 의사소통 도움 등
- (5) 치매관리 지원
 - 행동변화 대처, 프로그램 진행
- (6) 다음 항목 외의 경우 제외
 - 가사지원서비스는 수급자 본인에게 관련된 것만 인정된다.
 - 가족에 관련된 가사일과 요양보호사 업무가 아닌 업무행위는 하지 않는다.
- (7) 방문목욕
 - 가정방문 방문목욕

다. 비용 부담에 관한 사항

월 이용료는 매년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장기요양급여에 따라 달라지며, 기타 비급여비용 발생 시에는 전액 이용자가 부담하도록 한다.

제11조(의료를 필요로 하는 경우 그 구체적인 처리절차)

가. 서비스 이용 중 의료서비스

- (1) 서비스 제공자는 수급자 상태변화 및 응급상황이 발생하였을 경우 응급상황 지침에 따라 행동하며, 의료기관의 의사의 지시에 따른다.
- (2) 수급자에게 제공하는 보건의료서비스의 내용을 기록하고, 제공한 서비스에 대해 수급자와 가족에게 상세하게 알려주어야 한다.

나. 병원진료

- (1) 기관 수급자가 질병 또는 상해로 인하여 진료가 필요하다고 인정 될 때에는 언제든지 의사의 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조치한다.
- (2) 병원진료과정에서 수급자의 이동은 기관이 응급 상황시 우선적으로 이동 차량을 제공하며, 구급차가 필요하다고 판단 시에는 의료기관에게 의뢰하여 전문적 이동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한다.

제12조(서비스 제공자의 배상책임, 면책범위에 관한사항)

- 가. 서비스 제공직원이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과실이나 누락 등으로 인해 수급자에게 손해를 입히는 경우 배상할 의무를 진다.
- 나. 서비스 중 자연 사망하였을 때, 대상자가 임의로 외출하여 상해를 당하거나, 사망 시, 대상자가 본인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상해를 당하거나 사망 시에는 본 기관에게 배상을 요구할 수 없다.



육연노인복지센터